

이천시살고싶은고을이천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2. 9. 11(수)
산업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2년 8월 29일 이천시장 제출
나. 회부일자 : 2002년 8월 29일
다. 상정일자 : 제56회 이천시의회 (제1차 정례회)
제1차(2002. 9. 7) 산업건설위원회 상정
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산업복지국장 윤희문)

가. 제안이유

- '92년 6월 브라질리우에서 개최한 UN환경개발회의에서 21세기 지구환경보전 실천강령으로 지방의 제21을 채택함에 따라,
- 우리 시에서도 주민, 기업, 행정기관등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작성, 실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의 추진을 위한 살고싶은고을이천21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,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1) 협의회는 “살고싶은고을이천21”에 대한 의제작성 및 실천을 위한 조사·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함(안 제3조)

2) 협의회의 구성

- 위원의 구성범위(안 제4조)
 - 시민, 기업체, 민간단체, 전문가, 공무원 등 100인 이내
 - 의장 : 5인 이내의 공동의장과 공동의장 중 1인을 호선하여 상임의장을 둠
 - 공동의장 : 협의회를 대표함
 - 상임의장 : 총회의 의장이 되며, 협의회 사무를 총괄(안 제5조)
 - 자문기구 : 5인 이내의 고문과 20인 이내의 행정지원단을 둘 수 있도록 함
 - 행정지원단은 이천시청의 관련 실·과·소장으로 하며, 재임하는 동안 당연직 위원이 됨(안 제4조·제10조 및 제11조)
 - 협의회의 하부조직 : 운영위원회, 7개 분과위원회, 사무국을 둠
 - 사무국 :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천시 관내에 두며, 사무국장 1인과 간사 1인을 둘 수 있도록 함(안 제15조 내지 제17조)
 - 운영위원회 : 사무국장·분과위원장 및 환경보호과장은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(안 제18조 및 제21조)
 - 분과위원회 : 7개 분야 각 10명 내외로 구성(안 제22조)
[환경, 도시·교통, 교육·문화, 경제·행정, 복지·사회, 여성·청소년, 시민설천]
- 3) 재정 : 협의회 운영 및 사업재원은 시의 보조금, 기타수입 등으로 충당함
(안 제23조)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박규하)

- 본 제정조례안은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, 미래세대에 계승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
- 이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이천시살고싶은고을 이천21 추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
-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목적과 기본이념을 규정하였고,
- 안 제3조는 협의회의 기능을 명시하였으며,
- 안 제4조는 협의회의 구성으로 협의회는 5인 이내의 공동의장을 포함하여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5인 이내의 고문과 20인 이내의 행정지원단을 둘 수 있으며, 공동의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중 1인을 호선하여 상임의장으로 하며, 시민, 기업체, 민간단체, 전문가, 공무원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고 규정하였으며

- 안 제5조 내지 제8조에는 공동의장과 의장의 직무, 위원의 권리와 의무, 위원의 위촉과 해촉, 상벌 등을 규정하였고,
- 안 제9조에는 협의회의 기구로서 사무국, 운영위원회,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
-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협의회의 사업을 지도 자문할 고문과 행정적 지원과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시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지원단을 구성하였으며
- 안 제12조 내지 제14조에는 협의회의 운영으로 임무, 총회, 의결사항을 명시하였고,
- 안 제15조 내지 제17조는 사무국의 설치로 사무국은 이천시청 내에 두며, 사무국장과 간사 각 1인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
- 안 제18조 내지 제21조에는 운영위원회는 15인 이내로 사무국장, 각 분과위원장 및 환경보호과장은 당연직으로 하고, 그 외의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하며, 운영위원회는 운영세칙 제정 및 개정안 작성,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, 예산의 수립·집행 및 결산보고, 사무국장 및 간사선임, 각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을 규정하였으며
- 안 제22조는 협의회에 환경, 도시·교통, 교육·문화, 경제·행정, 복지·사회, 여성·청소년, 시민실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, 분과위원회의 임기, 회의 등을 규정하였고,
- 안 제23조 내지 제28조에는 시장은 협의회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, 회계연도, 결산, 감사선임, 시행규칙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일부수정의결(만장일치)

7. 수정안의 요지

가. 수정일자 및 제안자 : 2002년 9월 7일 산업건설위원회
김태일 위원장외 6인 제출

나. 수정이유

- 21세기 지구환경보전 실천강령으로 채택된 「지방의제 21」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하고자 하는 「이천시살고싶은고을이천21추진협의회」를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끌기 위해 다소 미비된 협의회의 구성원을 보강하고,
- 구성원의 활동을 지원하는 행정지원단의 운영체계를 집행부 현기구에 맞게 적용하여 조직도를 높이고,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의 명칭을 보완하여 협의회 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기 위함.

다. 수정주요골자

- 협의회의 구성원을 현 운영체계에 맞게 보완하고 행정지원단의 지원체계를 집행부 기구에 맞게 인원을 보강함(안 제4조 제1항)
- 행정지원단의 조직도를 높이고 지원사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새로이 정함(안 제11조 제1항)
-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개칭함(안 제22조 제1항)

※ 첨부 : 이천시살고싶은고을이천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8. 기타사항 : 없 음

이천시살고싶은고을이천21추진협의회구성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598호 관련
----------	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02년 9월 7일
제 안 자 : 산업건설위원회
(김태일 위원장 외 6인)

1. 수정이유

- 21세기 지구환경보전 실천강령으로 채택된 「지방의제 21」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하고자 하는 「이천시살고싶은고을이천21추진협의회」를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끌기 위해 다소 미비된 협의회의 구성원을 보강하고,
- 구성원의 활동을 지원하는 행정지원단의 운영체계를 집행부 현 기구에 맞게 적용하여 조직도를 높이고,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의 명칭을 보완하여 협의회 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기 위함.

2. 수정주요골자

- 협의회의 구성원을 현 운영체계에 맞게 보완하고 행정지원단의 지원체계를 집행부 기구에 맞게 인원을 보강함(안 제4조 제1항)
- 행정지원단의 조직도를 높이고 지원사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새로이 정함(안 제11조 제1항)
-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의 명칭을 현 실에 맞게 개칭함(안 제22조 제1항)

이천시조례 제 호

이천시살고싶은고을이천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이천시살고싶은고을이천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제4조제1항중 “5인”을 “7인”으로 하고, “20인”을“24인”으로 한다.

안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한 행정지원단의 단장은 부시장으로 하며, 위원은 협의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천시의 관련 실·과·소장으로 하되,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위원이 된다.

안제22조제1항제4호중 “경제·행정분과위원회”를 “산업경제·행정분과위원회”로 하고, 동조동항제6호중 “여성·청소년분과위원회”를 “노인·여성·청소년분과위원회”로 한다.